자동차안전연구원 업무세칙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10-1-4
제3조 업무의 구분10-1-4
제2장 연구원 업무 등10-1-6
제1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사, 시험 및 인증 등10-1-6
제4조 제작결함조사10-1-6
제5조 제원통보 및 입력 등10-1-6
제6조 기술검토10-1-6
제7조 안전검사
제8조 안전도평가
제9조 실측확인
제10조 형식승인10-1-7
제11조 확인검사
제11조의2 건설기계 부품인증10-1-7
제11조의3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10-1-7
제2절 성능 및 평가시험 등10-1-8
제12조 상호인증시험10-1-8
제13조 부품인증시험10-1-8
제14조 안전시험10-1-8
제15조 삭제<2010.07.30.>
제15조의2 저상버스 CNG 연비시험10-1-8
제16조 매연여과장치 성능평가시험10-1-8
제17조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시험10-1-9

제18조 삭제<2016.09.07.>
제18조의2 ETCS 단말기 인증시험10-1-9
제18조의3 삭제<2018.09.18.>
제18조의4 전기차 안전성확인 기술검토10-1-9
제18조의5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10-1-9
제18조의6 택시미터 제작검정10-1-9
제18조의7 안전운행성능 확인10-1-10
제18조의8 안전운행요건 확인10-1-10
제18조의9 번호판의 성능검사 등10-1-10
제3절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연구 등10-1-10
제19조 연구업무10-1-10
제20조 연구지원10-1-11
제20조의2 탄소중립 대응사업
제4절 대정부 기술지원 등10-1-11
제21조 기술지원 등
제22조 기준 등의 조사
제22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10-1-11
제22조의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10-1-12
제22조의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10-1-12
제3장 연구원시설 및 운용 등10-1-12
제1절 시설운영10-1-12
제23조 시험시설 사용수탁10-1-12
제24조 주행시험장운영10-1-12
제24조의2 K-City시험로 운영 ···································
제25조 시험 및 검사기기의 관리
제26조 기술자료실의 운영10-1-13
제27조 공작실의 운영10-1-13

제2절 위원회의 설치10-1-13
제28조 연구원발전위원회10-1-13
제29조 삭제<2010.7.30>
제30조 삭제<2010.7.30>
제31조 삭제<2010.7.30>
제4장 보칙10-1-13
제32조 교육10-1-13
제33조 수수료10-1-13
제34조 기타사항10-1-13
부 칙10-1-14

2010. 7.30. 개정(규정제904호)

자동차안전연구원 업무세칙

1997. 3.14. 개정(규정제430호) 2011. 3.14. 개정(규정제919호) 1998.10.31. 전면개정(규정제486호) 법률제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 개정) 2000. 7.25. 개정(규정제551호) 2013. 8.30. 개정(규정제1004호) 2002. 2.21. 개정(규정제591호) 2015. 6. 5. 개정(규정제1067호) 2002. 9.11.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제613호) 2016. 9. 7. 개정(규정제1110호)

2002. 9.11.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제613호)2016. 9. 7. 개정(규정제1110호)2003. 2.13. 개정(규정제631호)2017.10.20. 개정(규정제11147호)

2004.12.13. 개정(규정제686호)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제1160호) 2006. 5.26. 개정(규정제754호) 2018. 9. 18. 개정(규정제1193호)

2006. 5.26. 개정(규정제754호) 2018. 9. 18. 개정(규정제1193호) 2007.12.26. 개정(규정제815호) 2021.04.21. 일부개정(규정 제1330호)

2009. 3.25. 개정(규정제857호) 2022.06.20. 일부개정(규정 제137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13., 2006.5.26., 2017.12.4., 2021.4.21.>

- 제2조(적용범위)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업무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2.13., 2010.7.30., 2021.4.21.〉
 - ②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관련 제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4.21.>
- 제3조(업무의 구분) 연구원이 시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2.13, 2007.12.26, 2009.3.25, 2010.7.30, 2011.3.14., 2013.8.30., 2016.09.07., 2018.9.18., 2021.4.21.>
 - 1.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
 - 2. 자동차의 제원통보 및 입력 등(이하 "제원통보 및 입력 등" 이라 한다)
 - 3. 자동차의 기술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 4. 자동차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 5. 자동차의 안전도평가(이하 "안전도평가"라 한다)
 - 6. 이륜자동차실측확인(이하 "실측확인"이라 한다)
 - 7. 건설기계 인증 관련 업무

1993.12.31. 제정(규정제313호)

가.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 동일형식수입신고(이하 "형식승인 등"이라 한다)

- 나.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 다. 건설기계 부품인증
- 8.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 9. 자동차의 성능과 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시험
- 가. 자동차 상호인증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 이라 한다)
- 나. 자동차 부품인증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 다. 자동차 안전시험(이하 "안전시험" 이라 한다)
- 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압축천연가스(CNG) 연비시험(이하 "저상버스 CNG 연비시험"이라 한다)
- 마. 매연여과장치 성능평가시험
- 바.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시험
- 사. 삭제 <2016.09.07.>
- 아.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ETCS) 단말기 인증시험(이하 "ETCS 단말기 인증시험"이라한다)
- 자. 전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이하 "전기차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라 한다)
- 차.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 카. 택시미터 제작검정 〈신설 2018.9.18.〉
- 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성능 확인(이하 "안전운행성능 확인"이라 한다) 및 임시운행 안전운행요건 확인(이하 "안전운행요건 확인"이라 한다)
- 파. 번호판의 규정·재질·색상·반사성능 등과 기자재에 대한 품질 · 성능검사(이하 "번호판
- 의 성능검사 등"이라 한다) 등
- 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차시험 등
- 10. 자동차안전 및 성능에 관한 연구 업무
- 11. 대정부기술지원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개 정 2017.10.20>
- 가. 외국의 안전기준에 대한 조사
- 나.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관한 조사
- 다. 자동차 관련 신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 라. 국외사무소 운영업무
- 마. 기타 기술적인 지원업무 등
- 12.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
- 1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업무

- 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업무 등
- 14. 시험시설 사용수탁 업무
- 15. 시험시설 관리 업무

제2장 연구원 업무 등

제1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사, 시험 및 인증 등 <개정 2021.4.21.>

- 제4조(제작결합조사)①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제작결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안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작상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10.7.30., 2016.9.7., 2021.4.21.>
 - ② 연구원장은 제작결함조사 종료 후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13.3.23>

[전문개정 2003.2.13]

- 제5조(제원통보 및 입력 등)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제원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 ② 연구원장은 제원입력 후 신청인에게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3>
- 제6조(기술검토)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기술검토를 신청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제원, 중량분포, 주행장치의 안전성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에 적합하게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의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13.3.23., 2021.4.21.>
 - ② 연구원장은 기술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술검토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기술검토서를 발급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3.2.13., 2021.4.21.〉
- 제7조(안전검사)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안전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기술검토서의 내용 및 자동차제원표를 확인하는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검사소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소장이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2021.4.21.〉
 - ② 연구원장 및 검사소장은 안전검사 실시 후 그 결과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안전검사증은

발급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3.2.13. 2010.7.30>

- **제8조(안전도평가)** ① 연구원장은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방법, 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2.13〉, 〈개정 2010.7.30, 2013.3.23〉
- 제9조(실측확인)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실측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 등 실측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인이 검사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검사소장이 실측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2021.4.21.〉
 - ② 연구원장 및 검사소장은 실측확인 후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내용에 적합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 제10조(형식숙인)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10.7.30., 2021.4.21., 2022.06.20.>
 - ② 연구원장은 형식승인 등의 결과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13.3.23., 2022.06.20.〉

[본조신설 2007.12.26]

- 제11조(확인검사)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확인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형식승인 내용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21.4.21., 2022.06.20.>
 - ② 연구원장은 확인검사 결과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0.7.30., 2013.3.23., 2022.06.20.>

[본조신설 2007.12.26.]

- 제11조의2(건설기계 부품인증)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건설기계 부품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에 따라 부품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0.>
 - ② 연구원장은 부품인증 검토 후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의5서식의 건설기계부품(변경)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1.]

제11조의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① 연구원장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 야 하며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1.]

제2절 성능 및 평가시험 등

- 제12조(상호인증시험)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국가 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연구원장은 상호인증시험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2.13〉
- 제13조(부품인증시험)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3.3.23〉
 - ② 연구원장은 부품인증시험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3>
- 제14조(안전시험)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안전시험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 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2.13〉

제15조(연비시험) 삭제 <2010.7.30.>

- 제15조의2(저상버스 CNG 연비시험)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저상버스 CNG 연비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험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험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CNG 연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저상버스 CNG 연비시험을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 제16조(매연여과장치 성능평가시험)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매연여과장치성능평가시험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평가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매연여과장치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매연여과장치 성능평가시험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시험)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험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험계획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을 완료한 후 해당 도로안전시설이 제반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13.3.23>

제18조 삭제 <2016.09.07.>

- 제18조의2(ETCS 단말기 인중시험)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ETCS 단말기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험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험계획에 따라 ETCS 단말기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ETCS 단말기 인증시험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18조의3(저상버스 CNG 연비시험) 삭제 <2018. 9.18.>

- 제18조의4(전기차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전기차 안전성확인 기술검 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험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험계획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전기차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시행함에 있어 서류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하고, 안전성확인 시험을 완료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4]

- 제18조의5(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소음·진동관리법」제44조(소음 도 검사 등)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 ② 연구원장은 소음도 검사 후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30.]

- 제18조의6(택시미터 제작검정)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 의 검정 등)에 따라 택시미터에 대한 제작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제작검정 실시 후, 신청인에게 검정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본조신설 2018.9.18.]

- 제18조의7(안전운행성능 확인)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운행성 능 확인 또는 동일성 확인을 신청한 경우 성능 확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자료(자동차제작증, 시험성적서 등)가 성능 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안전운행성능 확인 또는 동일성 확인 실시 후 그 결과가 성능 확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성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다.

[본조신설 2021.4.21.]

- 제18조의8(안전운행요건 확인) ① 연구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확인지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1.]

- 제18조의9(번호판의 성능검사 등)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번호판의 성능검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번호판의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번호판의 성능검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1.]

제3절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연구 등

- 제19조(연구업무) 연구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업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위임전결세 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 1. 정부연구용역: 정부(공공기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발주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업무
 - 2. 일반연구용역: 자동차제작자, 부품업체 및 산업계 등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용역 업무
 - 3. 공동연구용역: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 업무

- 4. 위탁연구용역: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업무 〈신설 2003.2.13〉
- 제20조(연구지원)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제19조에 따라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연도 연구용역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정원 외로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2021.4.2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및 급여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 다. <신설 2003.2.13>, <개정 2010.7.30.>
- 제20조의2(탄소중립 대응사업) 연구원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및 제81조에 근거한 '목표관리제(교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진행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0.〉

[본조신설 2021.4.21.]

제4절 대정부 기술지원 등 <개정 2021.4.21.>

- 제21조(기술지원 등) ① 연구원장은 자동차 자기인증, 시험 및 관리제도 등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기술적인 요청이 있거나 법령에서 위탁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관련 업무를 수 했할 수 있다. <개정 2017.10.20., 2021.4.21.>
 - ② 연구원장은 대정부 기술지원시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 제22조(기준 등의 조사) ① 연구원장은 시험검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 자동 차 안전기준 또는 관련제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0>
 - ② 제1항의 조사분석 결과내용이 국내기준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정부에 건의하여 채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① 연구원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2.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분석
 - 3.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4.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양성
 - ② 국외사무소 운영 및 현지 근무자 선발·파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외사무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1.〉

[본조신설 2017.10.20.]

- 제22조의3(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① 연구원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하 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0.>
-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1.]
- 제22조의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① 연구원에서는 자율주행자동 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 2.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 3.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 의결 등 지원
 - 4.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술, 사고원인 및 조사기법 개발 등 관련 연구
 - ②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1.]

제3장 연구원 시설 및 운용 등

제1절 시설 운영

- 제23조(시험시설 사용수탁)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 의뢰가 있을시 수 탁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시설사용 수탁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3.2.13〉
- 제24조(주행시험장운영) 연구원장은 주행시험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행시험장 운영부서로 하여금 주행장 이용 및 유지, 보수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2.13.〉
- 제24조의2(K-City시험로 운영) 연구원장은 K-City시험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K-City 운영부서로 하여금 시설이용, 유지 및 보수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1.]
- 제25조(시험 및 검사기기의 관리) ① 연구원장은 시험 및 검사기기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시험 및 검사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험 및 검사기기의 교정,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최상의 상태로 정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기술자료실의 운영)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및 전문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문도서 및 자료 등을 구입하여 기술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장은 구입된 도서 및 자료 등의 보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하여야 하다.
- 제27조(공작실의 운영) ① 연구원장은 시험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 시험보조장치 등의 제작 또는 보수를 위해 공작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 ② 연구원장은 공작실 기기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위원회 설치<개정 2010.7.30>

- **제28조(연구원발전위원회)**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 발전방안 및 주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2015.6.5.. 2017.10.20>
 - ②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15.6.5>

제29조 삭제 <2010.7.30>

제30조 삭제 <2010.7.30>

제31조 삭제 <2010.7.30>

제4장 보 칙

- **제32조(교육)** 연구원장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이 필요하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13, 2010.7.30>
- 제33조(수수료) ① 제3조제9호라목에 대한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안전시험의 시가지연료소비율 직접시험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8.9.18., 2021.4.21.〉
 - ② 제3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10호까지(같은 조 제9호라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수료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12.13., 2010.7.30., 2018.9.18., 2021.4.21.>
- 제34조(기타사항) 이 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12.13.>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자동차성능시험업무요령과 자동차확인검사 및 완성검사업무요령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 또는 진행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 또는 진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 또는 진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2002.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9.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요령)(생 략)

제3조(명칭변경)①이 규정 시행 당시 제정 시행중인 제규정의 명칭중 규칙은 규정으로, 요 령은 세칙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제규정의 명칭을 변경한다.

- 1. "강사료등제수당지급규칙"을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으로
- 2. "보안업무규칙"을 "보안업무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사목 및 제16조중소음인증관련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소음인증기관 지정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 또는 진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12.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5.26>

이 규정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6>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25>

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7.30>

이 규정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14>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30>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5>

이 규정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7>

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20>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 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 <2018. 9.18.>

이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4.21.>

이 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79호, 2022.06.20.〉

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